

# 선진 지방세 제도 해외 정책연수 보고서(북유럽)

## □ 연수개요

- 방문일자 : 2018. 6. 1.(금)~6.12(화) 10박/12일
- 연수목적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지방세 제도 및 체납처분 기법 등 벤치마킹
- 연수자 현황
  - 전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자(30명)
- 내 용 : 북유럽 선진국의 지방세 제도 브리핑 및 질의응답

## 핀 란 드

## □ 일반현황

- 핀란드 개요
  - 공식명칭 : 핀란드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 수 도 : 헬싱키(Helsinki, 56만 명)
  - 인 구 : 약 5,543,000만 명
  - 면 적 : 338,145km<sup>2</sup>
  - 언 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 기 후 : 북극 온대성 기후
  - G D P : 약 2,895억 달러(2018년 기준)
  - 정부형태 : 의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가미)
  - 종 교 : 루터교(82.5%), 러시아정교(1.1%), 기타(16.4%)
  - 화폐단위 : 유로 (€)



## ○ 핀란드 행정체계

### - 행정기구



## ○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관계

- 핀란드 중앙국가행정은 중앙정부, 중간차원의 국가행정기구, 지방중앙행정기구 등 3단계에서 수행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각 부처와 중앙행정기구, 중간차원의 국가지방행정기구(AVIs, ELYs), 지방 차원의 행정조직(local policed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행정은 중간차원의 행정기구와 기초지자체(municipals)로 되어 있다.
-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는 20개의 광역지자체와 342개의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광역지자체 중 1개는 Åland섬이며, 342개의 기초지자체 중 108개는 시(cities), 234개는 군(rural municipal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모든 기초지자체는 법에 정해진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교육, 복지 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합동기초지자체협의회(Joint Municipal Board)'라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각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들간의 협력을 위해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위원회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 지방정부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핀란드 사회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시민에게 사회급여와 사회서비스의 보장이라는 보편적 권리의 원칙이며, 거주자의 웰빙증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보편적 사회정책의 운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운영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한다.

## □ 핀란드 조세제도 운용

### ○ 핀란드 재정현황

- 공공부문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금 및 사회보장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득세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단체와 민간기업들도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 세금수입은 지자체 운영비의 약 50%를 충당하나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 경우, 국가 보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국가보조금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공서비스의 평등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분야의 운영비로 직접 이전된다.
- 핀란드의 세금징수기관은 핀란드 국세청, 재무부 기관, 세관, 교통안전국(Trafi) 등이고 징수된 세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회 및 사회보장기관(Kela)에 배분된다.

## ○ 핀란드 조세수입의 항목별 비중(2016년, 969억 유로)

|               |                            |
|---------------|----------------------------|
| 소득세           | EUR 34.404 billion (35.5%) |
| 사회보장세         | EUR 27.019 billion (27.9%) |
| 재산세           | EUR 3.459 billion (3.6%)   |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 EUR 31.813 billion (32.9%) |
| 합 계           | EUR 96.930 billion         |

- 조세수입 중 35.5%는 소득세로써 중앙정부의 세무서(tax administration offices)를 통해 징수하고 지방정부와 교회로 배분한다. 32.9%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며, 사회보장세는 사회안전보장 기관으로 전액 지급된다. 3.6%는 재산세로서 부동산 유산상속비, 비즈니스 거래 등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배한다.
- 기초지자체 및 합동기초지자체(joint municipal authorities) 지출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교육 및 문화, 환경관리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쓰이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전체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 ○ 개인부담 조세와 세율

|       |       |                         |
|-------|-------|-------------------------|
| 국세    | 자본소득세 | 30% (5만유로 이상 32%)       |
|       | 근로소득세 | 6.5% ~ 31.75%           |
| 지방세   | 근로소득세 | 16.25% ~ 22.0%          |
|       | 재산세   | 있음                      |
| 근로자   | 연금    | 5.15% (53세 이상의 경우 6.5%) |
| 사회보장세 | 의료보험  | 약 2%                    |
|       | 실업급여  | 0.6%                    |
| 교회세   |       | 1~2%                    |

- 근로소득세는 크게 국세(state income tax)와 지방세로 나뉘어진다. 국세는 소득세로 이루어지며, 각 기초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세는 2013년 16.25 ~ 22.0%로 평균 19.38%이다.
- 교인은 교회세를 부담해야 하며, 2013년 교회세율은 교구에 따라 1 ~ 2%이다. 지방세, 교회세, 의료보험을 합한 세율은 17 ~ 24%이다.

## ○ 소득구간별 소득세율

| 소득구간(유로)       | 세 율    |
|----------------|--------|
| 16,100~23,900  | 6.5%   |
| 23,900~39,100  | 17.5%  |
| 39,100~70,300  | 21.5%  |
| 70,300~100,000 | 29.75% |
| 100,000 이상     | 31.75% |

- 2013년부터 10만 유로 이상 소득구간이 신설되어 31.75%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70,300 유로 이상이 최고 소득구간으로 29.75%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따라서 현재 핀란드의 고소득층 최고 세율은 연금기여금을 제외하고 31.75% + 24%로 56%에 달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인은 4만 5천유로 이상의 연금소득에 대해 6%의 추가 국세를 부담한다.
-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징수되며, 부동산세 세입은 총 세입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 □ 핀란드 조세종류

### ○ 법인소득세

- 2014년 1월 1일부로 법인세는 20%이며(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세금을 포함), 이는 2013년 24.5%에서 4.5% 인하된 비율이며, 핀란드 내에서 거주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들의 소득에서 세금이 계산되고, 핀란드 내에서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모든 소득이 기업과 연계돼 계산된다.
- 납세와 관련해서 기업의 핀란드 내 거주 및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핀란드에 등록된 회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
- 현재는 핀란드 국세청에서 핀란드 내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Prepayment register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원천과세를 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세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누진세로 총 6등분해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 격차가 매우 크다. 개인소득세 이외에 지방자치세(우리나라의 주민세와 비슷)가 총소득의 약 16.5 ~ 22.5%이며, 그 외 연금 등을 합치면 평균적인 개인 소득자는 약 30~4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 ○ 특별소득세

- 핀란드에서 24개월 동안 근무하는 외국인(특별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평균 5,800유로 이상의 월급을 받는)의 경우 평균 35%의 특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 부가가치세

- 2009년 8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 시기 음식물 및 동물사료는 12%에서 13%로 인상됐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22%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 2013년 1월 1일부터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표준 부가가치세가 23%에서 24%로 인상됐다. 이와 동시에 식료품 및 사료, 식당 및 케이터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3%에서 14%로, 교통 및 숙박시설과 신문, 잡지도 기존의 9%에서 10%로 인상됐다.

## ○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경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16.9% 정도이며, 각 피고용인은 약 2 ~ 5.1%(해마다 조금씩 변경)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법으로 강제돼 있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들의 사고에 대비한 사고보험료는 총소득의 1% 내외로서 고용주 부담이다.
- 연금보험의 경우 고용주부담이 종업원 총 소득의 20% 내외, 실업보험과 사고보험료가 각각 0.5% 내외이다.

## □ 핀란드 지방세 제도 시사점

### ○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 핵심역할 담당

- 핀란드는 포괄적 복지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복지전달 기능만을 하기 보다 복지세원, 즉 지방세를 결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며 복지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정도 자율적인 조세권을 갖고 주민에 지방세(16.5 ~ 21.5%)를 부과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세를 중심으로 사회보험급여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소득세, 중앙정부 교부금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및 모든 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다.



- 핀란드는 법적으로 적자재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적자가 나는 경우 3년 이내에 건전재정으로 회복시켜야한다. 이런 엄격한 조세 정의와 재정준칙은 고부담 고복지 모델을 유지시키는 토대가 된다.

## ○ 높은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핀란드는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44.1%)은 우리나라 26.3%, OECD 평균 34.3%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아동·보육 수당 제공 등 보편적·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런 복지제도의 확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고, 이는 높은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이 가능해야한다.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과 막대한 복지책임에 따라 핀란드의 기초지자체는 조세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조세 확대와 함께 재정준칙 도입,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으로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한다.
- 핀란드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51.75%로 노르웨이 47.8%보다 높고, 스웨덴 61%보다 낮으며, 2012년 기준 GDP 대비 사회지출은 핀란드 29%로 스웨덴 28.2%나 노르웨이 22.1%보다 높다.

## ○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

-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는 “과세정보 공개제도”에서 비롯되었고, 핀란드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비치된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책자에 해당지역의 주민의 이름, 전년도 소득, 전년도 납부세금을 공개한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과 세금을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 이런 과세정보 공개제도는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해 복지사회의 가장 큰 적인 무임승차자를 가려내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복지선진국가의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그 세금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적금이나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이 전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율은 26.3%로 OECD 국가 평균 34.3%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세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 《 공식방문 - 포르보시 세무부서 방문연수 》



# 스웨덴

## □ 일반현황

### ○ 스웨덴 개요

- 공식명칭 : 스웨덴 왕국 (The Kingdom of Sweden)
- 수 도 : 스톡홀름(Stockholm, 92만 명) 광역권 포함 223만명
- 인 구 : 약 10,093,734명
- 인 종 : 북구 게르만족(95%), 사미(Sami)족(0.2%)
- 면 적 : 449,964km<sup>2</sup>(한반도의 약 2.4배, 남한의 4.5배)
- 언 어 : 스웨덴어(Swedish)
- 기 후 : 북극 온대성 기후
- 1인당 GDP : 58,345\$(2018년 기준)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종 교 : 루터교 (Lutheran Church 국교 , 88%)
- 화폐단위 : 크로나(SEK)

### ○ 스웨덴의 행정구역 : 21개주(län) 290개 지방자치체(kommun)

| 주                                                                                              | 스웨덴어 이름             | 약자 | 면적 (km <sup>2</sup> ) | 인구 (2002년) | 주도     | 설립    |
|------------------------------------------------------------------------------------------------|---------------------|----|-----------------------|------------|--------|-------|
|  고틀란드 주     | Gotland län         | I  | 3,140                 | 57,412     | 비스빅    | 1678년 |
|  노르보텐 주     | Norrbotten län      | BD | 98,911                | 254,733    | 룸레오    | 1810년 |
|  달라르나 주     | Dalarna län         | W  | 28,194                | 277,010    | 팔룬     | 1634년 |
|  베를란드 주     | Värmland län        | S  | 17,583                | 273,933    | 칼스타드   | 1779년 |
|  베스테르노틀란드 주 | Västernorrlands län | Y  | 21,678                | 245,078    | 헤르니산드  | 1762년 |
|  베스테르보텐 주   | Västerbotten län    | AC | 55,432                | 254,818    | 우메오    | 1638년 |
|  베스트라예탈란드 주 | Västra Götaland län | O  | 23,942                | 1,500,857  | 예테보리   | 1998년 |
|  베스트만란드 주   | Västmanland län     | U  | 6,302                 | 257,957    | 베스테로스  | 1634년 |
|  블레킹에 주     | Blekinge län        | K  | 2,941                 | 150,017    | 칼스크로나  | 1683년 |
|  쇠데르만란드 주   | Södermanland län    | D  | 6,060                 | 257,220    | 뇌세핑    | 1634년 |
|  스코네 주      | Skåne län           | M  | 11,027                | 1,136,571  | 말뫼     | 1997년 |
|  스톡홀름 주     | Stockholm län       | AB | 6,490                 | 1,838,882  | 스톡홀름   | 1714년 |
|  예블레보리 주    | Gävleborg län       | X  | 18,191                | 278,171    | 예블레    | 1762년 |
|  연세핑 주      | Jönköping län       | F  | 10,475                | 327,824    | 연세핑    | 1687년 |
|  엠틀란드 주     | Jämtland län        | Z  | 49,443                | 128,586    | 외스테르순드 | 1810년 |
|  외레브로 주     | Örebro län          | T  | 8,517                 | 273,137    | 외레브로   | 1634년 |
|  외스테르예탈란드 주 | Östergötland län    | E  | 10,562                | 412,363    | 린셰핑    | 1634년 |
|  울살라 주      | Uppsala län         | C  | 6,989                 | 296,627    | 울살라    | 1634년 |
|  칼마르 주      | Kalmar län          | H  | 11,171                | 234,697    | 칼마르    | 1634년 |
|  크로노베리 주    | Kronoberg län       | G  | 8,458                 | 176,582    | 빅세     | 1674년 |
|  할란드 주      | Halland län         | N  | 5,454                 | 276,653    | 칼름스타드  | 1719년 |



## □ 스웨덴 조세제도 운용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와 지방자치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핵심에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의 독립적 운영에 따른 자율적인 세율 결정 및 징수권한 등 스웨덴의 지방세제도를 사례 삼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주요 세입 종류

-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주요 재정 수입원은 지방세,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이다.

### ○ 주요 세목과 세율

- 법인세 : 22% (2012년도까지 26.3%였으나 2013년도부터 법인세 인하)
- 부가세 : 일반적으로 25%
- 고용주세 (Payroll Tax) : 31.42%
- 개인소득세 : 기본 과세 → 지방세(평균 31.56%)

일정 소득수준 이상 → 내국세 추가(20%, 25% 추가)

※ 연간수입 430,200 SEK(약 52,000불) 이하 소득자 : 지방세만 부과

### ○ 1인당 조세부담

- 평균소득의 약 4%, 간접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하면 50%에 달함
- 교육, 의료, 실업보험, 연금, 노인복지 등 공공서비스는 완전 무료

※ 세출의 30%를 국민복지에 사용

### ○ 지방세 체계

- 스웨덴의 조세체계는 지방세와 국세의 이원체제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모든 급여생활자가 과세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
- 지방세는 기초와 광역지방세로 구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평균 31%의 지방세(소득세)를 징수하며, 이중 약 7%가 광역, 24%는 기초지자체로 배분

## □ 스웨덴 조세종류

- 소득세 : 개인소득세[지방세(광역,기초), 국세], 법인세
- 노동세 : 고용주세, 기초연금세, 임금특별세
- 소비세 : 흡연세, 주류세, 에너지소비세, 이산화탄소세, 도로교통세
- 주택보유세(종합부동산세)

###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별 비중

(단위 : %)

| 구 분              | 계   | 소득과세 | 사회보장<br>기여금 | 재산과세 | 소비과세 | 기타  |
|------------------|-----|------|-------------|------|------|-----|
| 국 세              | 100 | 21.5 | 21.0        | 3.1  | 57.0 | 0.2 |
| 지방세              | 100 | 97.5 |             | 2.5  |      |     |
| 조세비중<br>(국세+지방세) | 100 | 45.4 | 23.3        | 2.5  | 28.4 | 0.1 |

※ 세원별 비중면에서 소득과세가 총 조세의 45.4%를 차지함

(단위: GDP대비 %)

| 직접세  |            |     | 사회보장세 |      |      | 주택<br>보유세 | 소비세<br>(부가가치세) |
|------|------------|-----|-------|------|------|-----------|----------------|
| 합 계  | 개 인<br>소득세 | 법인세 | 합 계   | 피고용자 | 고용주  |           |                |
| 19.0 | 15.8       | 3.2 | 14.1  | 2.8  | 11.3 | 1.6       | 13.0           |

## ○ 소득세

-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제도의 변화는 1990 ~ 1991년의 조세개혁으로 '세기의 조세개혁(tax reform of the century)'이라 불릴 정도로 세율의 대폭 인하가 이루어짐.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한계소득세율이 50%대 수준으로 낮추고 국세는 최고 20%와 최고 25% 두 구간으로 나눔. 자본소득세는 30%의 단일세로 모두 국세로 편입됨.

| 소득액                              | 지방세 | 국세  | 합계  |
|----------------------------------|-----|-----|-----|
| 연간소득 430,200sek (50,600불)이하      | 30% | -   | 30% |
| 연간소득430,200~616,100sek (72,500불) | 상동  | 20% | 50% |
| 연간소득 616,100sek (72,500불)이상      | 상동  | 25% | 55% |

## ○ 사용자 사회보장세(고용주세)

- 사회보장세는 1955년에 도입된 이후 1973-1977년에 크게 인상됨.  
거의 모든 사회보장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물가억제를 위한 세율 조정정책이 실시되면서 주로 중·저소득자의 소득세 감소가 나타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인상된 것임.
- 스웨덴 복지 재원의 중요한 한 축이 바로 고용주세라 불리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세이며, 소득세에 더해 복지 재정의 중요한 자원인 고용주세(employer's tax)는 법인세와 별도로 고용주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금으로 피고용인의 연금, 건강보험료, 부모보험료 산업재해보험, 노동시장기금(labor market fund, 인력구조조정준비금 또는 실업세) 등 있음.

### ※ 근로자 사회보장세 현황

| 사용자 사회보장세 | 사용자 비용부담율(2011년기준) |
|-----------|--------------------|
| 의료보험      | 100%               |
| 산업재해보험    | 100%               |
| 국가보충연금    | 31%(근로자69%부담)      |
| 일반봉급세     | 100%               |
| 국가기초연금    | 100%               |
| 부모보험      | 100%               |
| 유족연금      | 100%               |

## ○ 소비세

- 소비세는 부가세, 판매세, 소비세 등을 포함하며 1930년대 5% 전후였던 소비세는 주류, 담배, 차량 등에 대한 소비세 인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차 대전 직후에 12%에 이르게 됨
- 소비세 세수 규모는 GDP 대비 13.1%로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큰 자원
- 소비세는 중앙정부가 징수 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일부 이전

## ○ 법인세

- 법인세는 이익 규모에 관계 없이 22%로 일정함.
- 법인세는 면세 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 스웨덴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며, 비거주 기업도 스웨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됨

## □ 시사점

### ○ 노사화합에 따른 노사안정으로 경제성장 견인

- 경제 성장을 위하여 정치인들이 노사 화합을 이끌어냄
- 노사 안정 → 경제성장 → 일자리 창출 → 세수증대 → 복지제도 구축

### ○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 담당

-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립적 조세와 복지재정 보장
- 지방정부의 주된 재원으로 지방소득세 운용 : 최고세율 61%
- 적정조세 보장과 재정준칙을 통하여 복지재정과 국민부담의 조화를 이루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 ○ 투명한 복지예산과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

-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는 “과세정보 공개제도”에서 비롯
  - 스웨덴은 매년 납세자들의 소득규모, 자산규모등을 “세금달력”이라는 이름의 책자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함
  - 소득과 세금을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보에 속한다고 생각
- 과세정보 공개제도는 탈세를 방지,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
  -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해 복지사회의 가장 큰 적인 무임승차자를 가려내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 것임



## ○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균등화 제도 도입

- 전국의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의 균등한 재정 조건을 형성
  - 부유한 지방정부가 재정균등 수수료를 중앙정부에 부담금 형식으로 납부
  - 중앙정부는 인구, 사회·경제적 수준, 환경·지리적 차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난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이전 함
- 재정균등 교부금을 수령한 지자체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준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전달을 위해 노력

##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방문》





## 노르웨이

### □ 일반현황

#### ○ 노르웨이 개요

- 면적 : 323,802km<sup>2</sup>(한국의 3배)
- 인구 : 약 535만명
- G D P : 4,432억불(2018년, 한국 1조 6,932억불)
- 1인당 GDP : 8만2710불(2018년, 한국 3만 2,774불)
- 경제규모 : 세계 28위(2018년, 한국 12위)
- 지방구조 : 주 정부(광역) - 19개, 지방 정부(기초) - 430개
- 중앙정부 : 국가사회보험제도, 전문 의료서비스(병원), 고등교육 및 대학, 노동시장, 난민 및 이민, 경찰, 군, 외교 등
- 지방정부  
(광역) 중등교육, 지역개발, 광역도로 및 대중교통, 지역계획기업, 문화기관 등  
(기초) 초등교육, 보육 및 유치원, 의료서비스, 지방도로, 농업, 환경, 상수도 하수도 등

### □ 노르웨이 조세 제도 운용

#### ○ 소득세 등 직접세 의존 비율이 높음

- 직접세는 원유·가스 등에 대한 세금과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가 약 6:4 비율이며, 간접세는 부가세(VAT)가 약 60% 점유

#### ○ 조세 체계 및 1인당 조세부담율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국세 87.2%, 지방세 12.2% 수준의 비율 구성
-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약 43%로, OECD평균 대비 9.1% 높은 수준
- 높은 조세 부담률은 보육, 의료, 교육, 복지 등 포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선택을 반영

- 국제적인 비용 경쟁력 확보와 경제 다변화 여건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매년 조세 부담률이 인하되는 추세
- 모든 세무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Tax Directorate)이 담당
-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2년 3월 1일자로 국세청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각 주(19개)에 지방 국세청(The Fylke Tax Office)을 두고, 그 산하 조직을 99개 지방 세무서(Tax assessment Office) 통합

## □ 노르웨이 조세의 주요 세목

### ○ 소득세

- 소득세 최고세율 38.7%는 OECD 평균(41.4%)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변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세율\*(25%)이 높아 개인 납세자가 평균 부담하는 세율은 높은 수준임
- ※ 북유럽 국가 소득세 최저세율 : 스웨덴(29%), 핀란드(17%), 덴마크(27%)
- 소득세 최고세율은 '92년 세제개편 당시 조세의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28%로 대폭 인하하였으나, '00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47.5%로 인상한 후 점진적으로 인하 추세

### ○ 법인세

- 법인세율은 27%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3.3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참고] 노르웨이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이유

- 노르웨이의 법인세율(27%)은 OECD 평균(22.4%)보다 약간 높으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0.5%로서 OECD 평균(2.8%)의 3.3배 수준
- 석유제품 생산·수송 업종의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27%) 외에 석유세(Special Petroleum Tax) 50%를 추가로 과세, 최고 78% 법인세 납부
  - \* 노르웨이는 천연가스 수출 세계 2위, 석유 수출 7위 국가로서 석유·가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국고수입의 1/3 수준
  - \* OECD 조세 분류상 석유세도 법인세수에 포함
- OPEC 감산 결정(1999년, 2001년), 이라크전쟁(2003년)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최근 14년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으로 법인세수 감소
  - \* 브렌트유 가결(달러/배럴) : ('10) 79.7 → ('11) 126.6 → ('12) 123.4 → ('14) 107.33 → ('15) 57.87

## ○ 석유세

- 자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운송(파이프라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27%) 외 특별세 명목으로 50%의 석유세 부과
  - ※ 납부한 석유세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 불산입 처리
- 석유세는 국영연기금(the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의 재원으로 즉시 전입되어 전액 해외 투자

### < 국영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

- 1990년에 설립, 펀드 자산규모는 약 8,584억불(2016.6월)로 세계 1위
- 2015년 수익률 약 2%대로 사상 최저
- 석유로 들어온 부(富)를 현 세대가 비생산적인 곳에 소비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재원 마련 및 석유고갈에 대비하기위한 국영연기금 조성 운영
- 석유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순현금흐름을 국영연기금에 불입

## ○ 부가가치세

- 최초 도입된 1970년 당시 표준세율은 20%였으나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세율이 인상되어 현재 표준세율은 25%수준
- 세율은 표준세율(25%), 경감세율(14%), 초경감세율(8%)로 3단계로 구분되며, 경감세율은 음식료품(14%), 초 경감세율은 교통요금, 영화 숙박(8%)에 적용, 책과 신문은 부가가치세 없음

## ○ 부유세

- 140만 크로네(약 2억원)를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의 자본(자산-부채)에 대하여 0.85%(국세 0.15%, 지방세 0.7%)의 부유세를 과세
  - ※ 2014년 100만 크로네를 초과하는 순부의 경우 1.1%, 2015년 120만 크로네를 초과하는 순부의 경우 1%를 부과하는 바, 지속 하락 추세
- 재산과세 비중은 OECD 평균 5.5% 및 한국의 10.6%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 사회보장제

- 개인 및 법인세 납세자는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따라 사회보장금을 부담

### < 국가보험제도 >

-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로, 연금(고령, 장애 등)·산재·질병·임신·출산·결혼·가정·장례 등에 대한 보험을 포괄하는 제도
- 납세자들은 사회보장금을 한 번만 납부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금과 주·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국가보험제도 운영

## □ 주요 질의 응답

### ○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높은 법인세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

- 석유세가 법인세수로 통합되어 전체 법인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

### ○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데 조세저항은 없나 ?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별로 없어 큰 저항은 없었으나, 감세논의는 있었음

### ○ 201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는데, 폐지 이유와 효과 ?

- 외국으로의 재산 이전문제 등 조세회피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폐지하였으며, 폐지 후 자국 내 자본유입이 늘었음.

## □ 시사점

###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또는 자원개발 등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가 필수

- 노르웨이는 1960년대 이후 성장을 대비 사회지출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지만, 북해유전 개발로 자원확보가 가능했기에 경제 위기 없이 고복지 유지 가능

-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조세 경쟁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성장친화적인 조세개혁 추진 필요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압력, 통일비용, 외부 경제위기 대응 비용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
  - 노르웨이는 석유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영연기금의 불입을 통해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석유자원 고갈 등에 선제적 대응

## 《 오슬로 시청 방문(세무간담회) 》



## 러시아

### □ 일반현황

#### ○ 러시아 개요

- 면적 : 17,098,242km<sup>2</sup>
- 인구 : 약 143백만명
- GDP : 1조7,199억불(2018년, 한국 1조 6,932억불)
- 1인당 GDP : 1만1,946불(2018년, 한국 3만 2,774불)
- 언어 : 러시아어
- 민족 : 러시아인(80.9%),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1.4%)
- 종교 : 러시아 정교
- 정치구조 : 연방제, 대통령제(6년 중임제), 의회민주제

### □ 러시아 조세 제도 운용

#### ○ 조세 종류 및 구분

러시아의 조세는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로 나뉘며,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주정부 또는 자치공화국 등이 과세하는 지방세(Regional Tax)와 시·군세(Local Tax)로 구분됨

#### ○ 연방세(Federal Tax) : 7개 세목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특별소비세(Excise Duty), 개인소득세(Tax on Income of Physical Persons), 사회보장세(Insurance Contributions),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천연자원세(Tax on the Extraction of Commercial Minerals), 수자원세(Water Tax)

## ○ 광역지방세(Regional Tax) : 3개 세목

법인자산세(Tax on the Assets of Organizations), 도박세(Gaming Tax)  
교통세(Transport Tax)

## ○ 시·군세(Local Tax) : 2개 세목

토지세(Land Tax). 개인재산세(Tax on the Property of Physical Persons)

## ○ 주요 조세의 세율표

| 구 분         | 세 목 명 | 세 율                                                                                                                          |
|-------------|-------|------------------------------------------------------------------------------------------------------------------------------|
| 연방세<br>(국세) | 부가가치세 |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
|             | 법인소득세 | 표준 과세율 20%(연방 2%, 지역 18% 귀속)<br>- 광역단체 :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가능<br>-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 0%이며, 정부채권에 대한<br>이자소득 세율은 15%, 9%, 0% |
|             | 개인소득세 | · 거주자 :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 등 35%<br>· 비거주자 :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
| 지방세<br>(광역) | 법인자산세 | 기업자산의 2.2%<br>-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해 세율인하/면세                                                                                 |
|             | 교통세   |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
| 지방세<br>(기초) | 토지세   | 토지 형태/용도/지역별로 책정, 0.3~1.5% 수준임                                                                                               |
|             | 개인재산세 |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

## □ 러시아 조세의 주요 세목

###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전액 연방예산에 납입

- 재화 및 용역의 매매·이전·수입 등에 부과되는 연방세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 부가가치세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됐으며, 기본 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인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 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 특별소비세(Excise Duty) : 연방 및 지방예산에 납입

- 과세물건 :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연방세
- 세 율 : 대부분 종량세이나 궤련의 경우 일부 종가세
  - (주 류) 알콜 도수 및 주종에 따라 1리터당 1.75 ~ 146.00루블
  - (담 배) 종류에 따라 부과, 필터 있는 궤련은 1,000개피당 65루블 + 8%(상한: 20%)
  - (자동차) 엔진 출력에 따라 0.75kW당 15.00~153.00루블
  - (유 류) 유종에 따라 1톤당 1,080~3,627루블

○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연방 및 지방예산에 납입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연방세이며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부과됨

-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 20%
  - 국제운송 선박, 항공기, 기타 교통수단의 운영 · 임대소득: 10%



- 배당소득: 기본세율 9%
  - 외국법인이 취득한 배당소득: 15%
- 특정 중앙 및 지방정부 발행채권 이자소득: 15%
- 손실발생시 향후 10년간 이연처리 가능(과거 발생이익 상계는 불허)

## ○ 개인소득세(Tax on Income of Physical Persons) : 연방 예산에 납입

- 기본세율: 13% ('02.1.1부터 단일세율 적용)
- 비거주자(연간 183일 이하 러시아 거주자)의 소득: 30%
- 배당소득 및 모기지 담보채권 이자: 9%
- 경품소득: 35%
- 예금금리가 중앙은행 재할인율 초과 시, 외화예금 금리가 9% 초과 시
  - 한도 초과 이자의 35% (한도 이내의 이자는 면세)
- 만기 5년 미만 저축성 보험의 수익률이 중앙은행 재할인율 초과 시
  - 초과수익의 35% (만기 5년이상 보험차익은 면세)
- 비은행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금리가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3/4 미만 시, 외화차입 금리가 9% 미만 시 : 차익의 35%

## ○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

- 2010년 1월부터 기존 사회보장세는 보험부담으로 대체됐으며, 고용주(Employers)에게 부과되는 보험부담은 연방예산,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등 3개 재원용도가 통합돼 징수
- Insurance Contribution(2010년 1월1일부터 사용되는 명칭)은 크게 Pension(연금), Social Insurance(사회보험), Medical Insurance(의료보험 - 연방/지방)의 3개로 나뉜다.
- 모두 급여(Salary)에 부과되며, 다만, Pension Fund(연금)는 연간 급여 51만 2000루블 기준까지 22%, 초과분 10%로 급여 구간별 차등 적용된다.

※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s/사회보장세) 요율 정리

(단위:%)

| 보험부담-사회보장세<br>(Insurance Contribution) | 표준 요율(Standard Rate) |             |
|----------------------------------------|----------------------|-------------|
|                                        | 2012 ~ 2013          | 2014 ~ 2019 |
| 연간 급여가 512,000루블 미만인 경우                |                      |             |
| Pension(연금)                            | 22                   | 26.0        |
| Social insurance(사회보험)                 | 2.9                  | 2.9         |
| Medical insurance(연방보험)                | 5.1                  | 3.1         |
| Medical insurance(지방보험)                | 0.0                  | 2.0         |
| 연간 급여가 512,000루블을 초과할 경우               |                      |             |
| Pension(연금)                            | 10.0                 | 0.0         |
| 총 계                                    | 30.0                 | 34.0        |

※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s/사회보장세) 납세의무 유무

| Insurance Contribution  | 변경전 |     | 변경후<br>(2012년부터) |     |
|-------------------------|-----|-----|------------------|-----|
|                         | 내국인 | 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 Pension(연금)             | ○   | ×   | ○                | ○   |
| Social Insurance(사회보험)  | ○   | ×   | ○                | ×   |
| Medical Insurance(의료보험) | ○   | ×   | ○                | ×   |

○ 천연자원세(Tax on the Extraction of Commercial Minerals)

- 상업적 천연자원 채취 시 부과되는 연방세로서 연방 지방 예산에 납입
- 천연가스를 제외한 대부분 자원은 종가세가 적용

※ 과세대상별 세율

원유(16.5%), 천연가스(1,000입방미터당 135루블), 가스 콘덴세이트( 17.5%), 비철금속 광석, 천연 다이아몬드(8.0%), 미네랄워터(7.5%), 귀금속(금 제외) 원석(6.5%), 비금속 광물자원, 역청탄, 금광석(6.0%), 방사성 금속 원석, 천연 소금, 보크사이트(5.5%), 철광석(4.8%), 석탄, 토탄(4.0%), 칼륨(3.8%)

## ○ 수자원세(Water Tax)

하천, 호수 및 해양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수면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연방세

### ※ 과세대상별 세율

- 하천, 호수 지표수/지하수 채취 : 지역별 1,000입방미터당 246~678루블
- 해양 수자원 채취 : 해양별 1,000입방미터당 4.32~14.88루블
- 하천, 호수 수면 이용 시 : 지역별 1평방킬로미터당 연간 28.20~34.44루블
- 해양 수면 이용 시 : 해양별 1평방킬로미터당 연간 14.04~49.80루블
- 수력발전용 수자원 이용 시 : 지역별 1,000kW당 4.80~13.50루블
- 목재운반용 하천, 호수, 해양 이용 시 : 목재 1,000입방미터 운반거리 100km당 1,183.2~1,705.2루블

## ○ 법인자산세(Tax on the Assets of Organizations)

러시아 법인 또는 러시아에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고정자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2% 범위내에서 주, 자치공화국 별로 정함

## ○ 도박세(Gaming Tax)

도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아래 범위내에서 주, 자치공화국 별로 세율을 정함

- 게임 테이블 : 1개당 매월 25,000 ~ 125,000루블
- 게임 기계 : 1대당 매월 1,500 ~ 7,500루블
- 마권 배당률 표시기 또는 마권 판매창구 : 1개당 매월 25,000~125,000루블

## ○ 교통세(Transport Tax)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세 율 : 아래 세액의 5배(1/5배) 범위내에서 주, 자치공화국별로 정함

### ※ 과세대상별 세율

- 자동차, 버스, 화물차 : 종류 및 총 마력에 따라 연간 1마력당 5~30루블
- 항공기, 헬리콥터 : 종류에 따라 1마력당 20~25루블
- 보터보트, 선박 : 종류 및 총 마력에 따라 연간 1마력당 10~50루블

### ○ 토지세 (Land Tax)

토지를 보유(소유 또는 무기한 이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군세

- 세 율 : 아래 세율의 범위 내에서 시·군정부 별로 정함

- 농지, 주택 및 공장용지, 원예용지, 축산용지 : 0.3%
- 기타 토지 : 0.5%

### 《 모스크바 세무서 방문(세무간담회) 》



## 북유럽의 조세제도 정책연수 소감

- 10박 12일의 연수기간 동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4개국의 지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최대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부담감으로 각종 조세업무 등 모든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 유럽 선진국 방문을 통해 조세정책을 비롯한 도시행정과 미래정책 방향, 주민편익 정책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유럽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가슴 아픈 현장들이 있음에도 자연·문화 유산 자원을 소중히 보존·관리하며, 지역주민과 공생 가능한 유산 개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의 흐름을 역사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놀라웠다.
- 또한, 사회복지와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유럽을 보면서 사교육에 부모와 아이들이 시달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으며 사회복지·환경·교육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을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반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확대(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재원 분담 논란이 있고
- 지방정부 역할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방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배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 고품질 복지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운영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있게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